

유럽연합과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의 소재

-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관문(gateway)이 아니라 문지기(gatekeeper)로서 역할(입점업체의 시장 접근 및 사업적 성공 여부를 결정)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보
- 입점업체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심화, 불공정 거래관행

유럽연합(EU)의 P2B 규정

- EU에서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하고, 예견가능하며, 지속가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0. 7. 12.부터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영업적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Regulation)”이 시행되고 있음
- P2B 규정의 목표: 입점업체의 지위 강화 및 소비자 보호
- P2B 규정의 규범적 특성: 계약법, 공정거래법 및 소송법적 요소로 구성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 플랫폼 운영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배려하면서 입점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플랫폼의 계약조건 등에 관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도모
- 특정 디지털 플랫폼: 특히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자주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대형 플랫폼으로서 경제산업 대신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자

P2B 규정의 규제적 특징(약관법적 접근방식)

- P2B 규정은 행정법적 접근방식에 같음하여 약관법적 접근방식을 채택: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 이용약관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
- 이용약관은 입점업체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입점업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또는 일부 정지 또는 종료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한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
- 물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통 채널 및 제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P2B 규정의 규제적 특징(약관법적 접근방식)

- 입점업체의 소유권 및 지시재산권의 통제에 관한 이용약관의 영향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 부수적 물품(ancillary goods) 및 부수적 서비스(ancillary services)의 제공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함
- 입점업체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다른 조건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한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함
-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업체의 신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함

P2B 규정상 이용약관 변경 시의 권리와 의무

-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약관 변경 시에 입점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저장매체로 의도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
- 이용약관 개정통지는 개정 전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영향을 받는 입점업체는 늦어도 변경사항의 시행과 함께 플랫폼 운영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플랫폼 운영자는 그의 이용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입점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기존 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음

P2B 규정상 약관의 관한 특별의무

- 원칙적으로 이용약관의 변경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 이용약관에는 입점업체가 플랫폼 운영자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이용약관에는 플랫폼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사용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검색 순위 변수의 공개

- P2B 규정상 플랫폼 운영자는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및 다른 변수와 비교한 상대적 가중치를 둔 이유를 이용약관에 밝혀야 하지만, 알고리즘을 비롯한 검색 순위 지장 방법의 세부 기능 내지 영업비밀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송갑석 의원안 제5조 제1항은 제6조, 제7조는 P2B 규정과 유사한 취지로 보이나, 전해숙 의원안 제11조 제1항은 자칫 알고리즘 공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Hybridplatform)

- P2B 규정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와 판매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자신과 입점업체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대우를 설명할 것을 요구
- 송갑석 의원안은 제10조에서 차별대우를 금지하지만, P2B 규정처럼 차별대우에 관한 설명을 통해 입점업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

데이터에 대한 접근

-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핵심적인 가치 창출 요소
- P2B 규정상 입점업체는 그가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생성한 데이터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 만료 후에도 이루어지는 모든 접근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포괄적으로 정보제공을 받음
- 공정위 법안 제6조 제12호도 P2B 규정과 같은 취지이지만, 전혜숙 의원안 제10조는 데이터 사용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최저가격조항

- P2B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는 그의 이용약관으로 입점업체가 플랫폼을 통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고려이유 36)
- 반면 전혜숙 의원안 제13조 제1항 제10호는 이를 금지함

집행 및 제재

- P2B 규정은 EU 회원국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입접업체의 대표 조직, 협회가 플랫폼 운영자를 상대로 쟁송할 수 있는 가능성(단체소송)을 열어둠
-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한 법률은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집행 및 제재와 관련하여 행정적 수단을 중심으로 함
- 우리 입법안에도 단체소송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행정적 조치를 주된 집행 및 제재의 수단으로 함

규제당국

- P2B 규정은 원칙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규제당국이지만,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집행은 회원국의 소관사항이며, 독일의 경우 연방카르텔청(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이 규제당국
-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입법론적 시사점(1)

- P2B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규율에서 경쟁법과 계약법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음
-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에 대하여 규율의 밀도가 달라져야 함
- 일반적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역동적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기 보다는 사법(私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P2B 규정이 보여주듯 약관법적 규율에 의하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음

입법론적 시사점(2)

-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규율은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의 보호에 치우쳐서는 안 됨
-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법 제3조는 같은 법의 기본이념을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의 경제사회의 활력의 향상 및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의 관여 기타 규제를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창의와 연구가 충분히 발휘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은 우리의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것임

• 감사합니다